

## 포 상 규 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에 의거 수자원분야에 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회가 행하는 포상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포상종별) 포상은 일반포상과 특별포상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포상이란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말한다.

1.공로상 2. 원태상 기념상 3.학술상 4.기술상 5.저술상 6.논문상 7.학위논문상

② 특별포상이란 다음 각 호의 포상을 말한다.

1.수자원 대상 2.수자원 금상 3.수자원 은상 4.언론인상 5.저작상

제4조(일반포상) 학회는 수자원에 관한 학술 및 기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로상은 우리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한 회원 중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자로서 수자원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2. 원태상 기념상은 우리 회원 중 수공학 관련 분야에 탁월한 학술적 공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하며, 심사와 선정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3. 학술상은 우리 회원 중 수자원에 관한 탁월한 저서 또는 논문을 발표하여 학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에게 수여한다.

4. 기술상은 우리 회원 중 수자원기술에 독자적인 창의력 등을 발휘하여 기술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5. 저술상은 우리 회원 중 저술활동을 통하여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6. 논문상은 우리 회원 중 학회 논문집에 기여가 큰 저자 또는 논문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논문상은 최다 게재부문, 최다 피인용부문, 올해의 논문 부문으로 구분하며, 최다 피인용 부문 및 올해의 논문 부분에 대한 심사와 선정은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7. 학위논문상은 우리 회원 중 우수한 박사학위 논문(당해년도)을 발표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특별포상) 수자원에 기술 발전과 수공 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자원 대상은 수자원 기술 발전과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2. 수자원 금상은 수자원 기술 발전과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전국 규모로 국민의 관심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3. 수자원 은상은 수자원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4. 언론인상은 수자원분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나 특집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수자원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5. 저작상은 수자원 분야에 관한 독창적인 학술 및 기술서적을 저술하여 수자원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회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수상후보) ①제4조, 제5조의 수상자 혹은 단체 후보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추천을 할 때는 수상자 혹은 단체 후보의 연구 또는 기술업적, 공로개요 및 선정이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의 결정) ①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혹은 단체를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그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총회 또는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수여한다.

제10조 (심사수당) 제6조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이중수여의 금지) 동일한 학술 및 기술업적이나 공적에 대하여 제3조의 1항 포상을 거듭 수여하지 못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의 일부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의 일부개정은 200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의 전부개정은 201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의 일부개정은 2023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